

예산총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34,979,772	34,049,393
일반회계	897,530,636	26,925,919
특별회계	237,449,136	7,123,474
공기업특별회계	129,405,230	3,882,15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1,167,297	2,435,01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237,933	1,447,138
기타특별회계	108,043,906	3,241,317
주택사업특별회계	90,000	2,7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043,808	211,314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2,427,100	2,472,813
교통사업특별회계	13,420,302	402,609
대지보상특별회계	1,577,688	47,331
기반시설특별회계	87,756	2,633
수질개선특별회계	2,693,252	80,798

제 2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5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6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8,581,770천원』 으로 한다.

제 7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5,600,000천원』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